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9. 22 선고 2014가합10603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망 B의 소송수계인 C

2. 망 B의 소송수계인 D

변론 종결 2015. 8. 18.

판결 선고 2015. 9. 2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수원시 장안구 E 임야 480㎡ 중 3/5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는 수원시 장안구 E 임야 480㎡ 중 2/5 지분에 관하여

각 2008. 5. 29.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에게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265,356,000원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는

176,904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. 1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원고는 망 B(2014. 9. 4. 사망, 이하, '망인'이라 한다)의 형인 F의 손자이다.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(이하 '피고 C'라고만 한다)는 망인의 배우자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(이하 '피고 D'라고만 한다)는 망인의 아들로써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나. 증여계약의 체결

망인은 2008. 5. 29.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입원한 직후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1,638m²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, E 임야 480m²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, 광명시 H 답 1,907m²(이하 'H 토지'라 한다)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'유언장', 위 토지들의 명의 이전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'위임장'을 작성하고,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한 2008. 6. 10. 이후 원고에게 위 유언장과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.

다. 부동산의 처분 및 시가

- 1) 원고의 부인 I은 2008. 10. 3.경 망인을 대리하여 H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, 그 후 망인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.
- 2) 피고 D는 2009. 11. 25. 망인을 대리하여 K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, 2009. 12. 9. K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- 3) 2009. 12. 9.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442,260,000원으로 평가된다.

[인정근거] 자백간주 사실, 을 제15호증의 기재, 감정인 L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의 쟁점

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, 이 사건

제1토지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,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.

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고와 망인 사이에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.

3. 판단

가.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이었는지 여부

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).

을 제2, 5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파킨슨병과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,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일인 2008. 5. 29.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고, 입원 직후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26,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메모지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기재한 점, 망인은 '유언장'이라고 기재된 메모지와 별도로 등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'위임장'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소유권이전에 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, 망인은 위 위임장과 유언장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인 2008. 5. 29.경 작성한 후 병원에서 2008. 6. 10. 퇴원한 이후에 자신의 집에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증여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표시한 점, 망인은 '유언장'과 '위임장'을 작성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아버지인 I로 하여금 H 토지를 매도하게 하고 그 대금 중 3억 원을 I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점, 망인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작업 기억력, 시공간 기능, 부분적인 전두엽 기능의 유의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기는 하였으나 기억력이나 의사소통능력, 명명능력 등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

망인이 파킨슨병과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
나.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

피고들은 원고가 H 토지의 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러므로 원고에게, 피고 C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상속지분비율인 3/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비율인 2/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. 12. 9.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피고들은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시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. 이 사건 제1토지의 2008. 12. 9. 당시 시가가 442,260,000원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 C는 265,356,000원(= 시가 442,260,000원 × 상속지분비율 3/5), 피고 D는 176,904,000원(= 시가 442,260,000원 × 상속지분비율 2/5)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. 12. 24.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. 1. 1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철규

판사남수진

판사원운재